

5.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47號. 1991年 4月 25日

가. 유원지설치사업과 공원사업의 경우
숙박시설·스키장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
상이 되는 시설을 정함.

나. 토지형질변경허가·산림훼손허가·농지
전용허가 등을 받아 건축법상의 주택이
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등 개발부담
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를 정
함.

다. 건축물의 착공이나 사용개시로 준공
전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,
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면적
을 구하기 위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
곱하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정함.

라. 개발비용내역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준
공 후 15일에서 사업준공 후 25일로
연장함.